

추천위원회규정

2009.09.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혁제학원 정관 제24조의 3(추천위원회 구성)에 의거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본 규정에 의한 추천위원회는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① 추천위원회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③ 추천위원회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법인장관 제24조의 2와 제25조 5항의 개방이사 및 개방 감사를 추천하되 추천하는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1. 개방이사는 2배수 추천한다.
2. 개방감사는 단수로 추천한다.

제5조(임기)

1. 추천위원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추천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장 심의

제6조(의사결정) ①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 대상이 결정되면 5일 이내 의장은 결정된 내용을 문서로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통지한다.

제7조(추천위원회 소집) 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위원장은 적어도 회의 7

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추천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득한 후 대학평의원회의장 앞으로 송부하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를 관리하고 보관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 추천위원의 위원장은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면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추천위원회에서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정관 변경 등의 필요한 사유가 발생 시 대학평의원회의결로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